

-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4. 9.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기획전략과]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기획전략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행정의 다변화, 고도화에 따라 소송 및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대구시 및 타 구군 등의 기준에 맞추어 보완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6조(소송비용 등)의 별표 기준을 상고심 종국 판결 시 승소사 례금이 1/2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승소사례 지급액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변호사 소송 수행 의욕을 고취하고, 고문 변호사 승소사례금 지급 기준을 최종심 기준으로 함을 명문화하여 효과적인 고문변호사 소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또한,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되는 경우 확장된 소송 물가액을 기준으로 착수금이 지급되도록 명문화하고,
- 직무 관련사건 및 악성 민원 위법행위에 원활히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 지급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 밖에 출장비 지급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 2024년 9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고문변호사에 대한 승소사례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24. 9.
제출자: 달서구청장
(기획전략과장)

1. 제안이유

-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사사건 지급기준을 추가

2. 주요내용

○ 소송비용 지급기준 명확화 및 형사사건 지급기준 추가(별표)

- 승소사례금 지급기준 최종심 명문화 및 상고심 종국판결 시 승소사례금이 1/2로 줄어드는 불이익 개선
-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토지수용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등)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지급 명문화
- 직무관련사건 및 악성민원 위법행위 법적대응을 위한 형사사건 지급기준 추가
- 출장비 지급 관련 규정 현행화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비대상

6.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라. 행정규제 심사: 해당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2024. 8. 1. ~ 8. 21.) 결과: 의견 없음

사.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구 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소사례금		내 용	착 수 금	승소사례금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기준) ·2,000만원 미만	800,000원 이내	60% 이상 승소 확정 의 경우 착 수 금 에 승소 비율 을 곱한 금액	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기준) ·2,000만원 미만	800,000원 이내	60% 이상 승소 확정 의 경우 심급 중 가장 많은 착 수 금 에 승소 비율 을 곱한 금액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500,000원 이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500,000원 이내		
	·5,000만원 이 상 1억원 미만	2,000,000원 이내		·5,000만원 이 상 1억원 미만	2,000,000원 이내		
	·1억원이상 2억원 미만	2,500,000원 이내		·1억원이상 2억원 미만	2,500,000원 이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00원 이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00원 이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500,000원 이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500,000원 이내		
·10억원 이상	4,000,000원 이내	·10억원 이상	4,000,000원 이내				
<신설>				형사사건	<u>1. 수사단계, 심급별</u> <u>2. 불기소처분에</u> <u>대한 항고, 재항</u> <u>고, 재정신청</u> <u>3. 환송심</u>	없 음	
기 타	5. 출장비 및 여비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공 무원 여비 조 례」중 4급 공 무원 해당액		기 타	5. 출장비 및 여비	「공무원 여 비 규정」 별 표 1의 제2호 에 따른 금액	

현행	개정안
<p>※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p> <p><신설></p>	<p>※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p> <p>※ <u>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 시의 소송물가액은 소(항소, 상고)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함 단,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함</u></p> <p>※ <u>승소사례금은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종국 판결에 의해 확정된 후에 지급함(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함)</u></p>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소사례금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1. 신청사건 · 변론이 없는 경우 · 변론이 있는 경우	200,000원 이내 300,000원 이내	없 음 60% 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u>심급 중 가장 많은 착수금에</u>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기준) ·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800,000원 이내 1,500,000원 이내 2,000,000원 이내 2,500,000원 이내 3,000,000원 이내 3,500,000원 이내 4,000,000원 이내	
	3. 상고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2 이내	
	4.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2 이내	
<u>형사사건</u>	1. <u>수사단계, 심급별</u>	<u>2,000,000원 이내</u>	없 음
	2. <u>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u>	<u>1,000,000원 이내</u>	
	3. <u>환송심</u>	<u>1,000,000원 이내</u>	
기 타	1. 인지대	실 액	
	2. 송달료	실 액	
	3. 검증비	실 액(다만, 현장검증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4. 감정료	실 액	
	5. 출장비 및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u>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금액</u>	
	6. 복사료 등 그 밖의 경비	실 액	

-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함
- ※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 시의 소송물가액은 소(항소, 상고)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함
단,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 ※ 승소사례금은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중국판결에 의해 확정된 후에 지급함(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함)

【관 계 법 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소송비용 등)① 일반고문변호사가 수입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고문변호사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지급현황(2024. 5월)

구군	승소사례금 지급 기준	실제 지급
중구	60% 이상 승소 확정인 경우 <u>심급 중 가장 많은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u>	최종심
동구	60% 이상 승소 확정인 경우 <u>심급 중 가장 많은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u>	최종심
북구	60% 이상 승소 확정인 경우 <u>심급 중 가장 많은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u>	최종심
수성구	60% 이상 승소 확정인 경우 <u>심급 중 가장 많은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u>	최종심
남구	60%이상 승소 확정인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심급별
서구	60%이상 승소 확정인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심급별
달서구	60%이상 승소 확정인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최종심(상고심 경우 착수금의 1/2)
달성군	60%이상 승소 확정인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심급별
대구시	60%이상 승소 확정인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최종심